

의안번호	2219542
의 퇴 인	서영석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0.
추계번호	26C3083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22조의3 (기수급자 및 수급 탈락자에 대한 급여자격 확인 등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*의 장이 확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※ 확인대상자: 해당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및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사람 ※ 보장기관: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	재량규정
		(제2항)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확인대상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3항) 제2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3 (기수급자 및 수급 탈락자에 대한 급여자격 확인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수급 중단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, 보장기관¹⁾의 장이

1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수급자격을 충족한 사람에게 본인의 별도 급여 신청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집행하는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본인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여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,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될 사람의 수와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안 제22조의3은 수급자격 확인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범위, 확인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정기 확인에 따라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 급여의 종류와 신규로 해당 급여를 수급받을 사람의 수를 알 수 없음
- 또한, 현행법 제3조²⁾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급여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(중략)

5. “보장기관”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

2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, 방법,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